

골든 힐즈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

정책:

해당 지구에서는 수도 요금을 최소 60일 동안 연체한 구매자에 한해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해당 지구에서는 최소 평일 기준 7일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비스 중단 고지:

서비스 중단 고지는 해당 구매자의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서면 중단 통지와 해당 정책의 사본이 전달됩니다. 이 두 서류는 구매자의 현관문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계정에 등록된 주소와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 서면 중단 통지와 해당 정책의 사본이 “거주자(Occupant)”의 이름 아래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도 전달됩니다. 서면 중단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연체 금액;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요금 혹은 납부 일정을 지정해야 하는 날짜; 연체 금액이나 가감된 금액 납부를 위한 대체 납부 기한 혹은 연체된 주거용 서비스 요금 할부 요청 방법 과정; 해당 지구의 주거용 서비스 중단이 게시된 웹사이트 링크와 관련 부처 전화번호.

납부 일정/할부 상환 계획:

기존 납부 일정 안에 수도 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체료를 물거나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납부 기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납부 기한을 요청하려면, 연체 요금이 적힌 지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이후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 연장된 새 납부 기한은 할부 상환 계획으로 재명명되며 구매자는 동의 사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할부 상환 계획은 미납 금액을 분할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기간(기존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내에 상환하는 할부 상환 계획입니다. 이 분할 금액은 완납 때까지 구매자가 요청한 대체 납부 기간 동안 구매자가 매달 받는 고지서에 더해지게 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할부 상환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구매자가 추후 매달 받게 되는 고지서에 명시된 수도 요금과 분할 금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할부 상환 계획에 따라 미납 금액을 상환하는 동안, 차후에 발생하는 미납 금액으로 인한 새로운 할부 상환 계획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할부 상환 계획 효력 날짜 이후부터 구매자가 추후 매달 받게 되는 고지서에 명시된 수도 요금과 분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할부 상환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 중단 고지가 발급됩니다. 수도 서비스 중단 고지는 서비스 중단 고지 날짜 기준 평일 5일 전에 해당 구매자의 계정에 등록된 주소(구매자의 현관문)로 전달됩니다. 해당 지역 사무소(전화번호: 661-822-306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항소를 하고 싶은 소비자의 경우,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고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에게 이의 제기나 항소를 보내야 합니다. 지구에서 이의 제기나 항소에 관해 결정을 내리면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며, 소비자는 다음 고지서를 수령할 때까지 지구에서 결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중단 최종기한:

미납한 수도 요금이나 관련 연체 벌금은 서면으로 고지된 중단 최종기한 날짜의 오후 정각 5시까지 지구가 수령해야 합니다.

서비스 복구: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수도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하려면, 구매자는 반드시 서비스 복구비를 내야 합니다. 지구는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수도 서비스 중단을 야기한 금액이나 연체금을 지불한 후 다음 평일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 인사와 혹은 해당 지구의 승인 없이 수도 서비스를 임의로 재개한 경우 벌금이나 추가 요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재개한 수도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전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 오후 5시가 넘어서 재개된 서비스는 근무 시간 이후의 호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지역 사무소의 근무 시간 이후에는 구매자가 근무 시간 이후의 호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인정하며 해당 지구 청구 부서에 연락하여 다음날 낮 12시 이전까지 해당 금액 지불에 동의(사인 제출 필요)해야 수도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근무 시간 이후의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호출 금액은 일반 서비스 복구비와 구매자의 계정에 있는 미납 금액에 따로 추가로 더해지는 비용입니다. 전화 문의에 응답하는 지역 사무소 직원은 결제를 담당할 수 없지만, 다음날(평일 기준) 낮 12시 이전까지 해당 지구 청구 부서에 연락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구에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처한 주거자를 대상으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 A. 구매자 혹은 구매자의 세입자가 허가받은 1차 의료 제공자로서, 주거지에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청에 자격증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¹
- B. 구매자가 지구가 지정한 일반 고지서 발송 주기에 맞춰 경제적으로 요금 납부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가구에서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보조적 소득 보장/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가계의 연간 소득이 연방 정부 지정 빈곤 기준선(FPL)의 200% 미만에 해당된다고 선언하는 경우, 도시와 지역 수도가 지정한 일반 고지서 발송 주기에 맞춰 경제적으로 주거용 서비스 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C. 구매자가 연체된 수도 요금과 보건과 안전 법률 항목 116906의 하위 구분 (a)의 분과 104의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 의거하여 쓰인 정책에 맞춰진 할부 상환 계획 혹은 대체 납부 기한, 연기 지불 기한, 삭감된 지불 기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상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지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납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미납 금액 할부 상환 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연체된 금액으로 인한 할부 상환 계획을 따르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60일 이상 지불하지 않거나 해당 주소로 발급된 수도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구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통지를 서면으로 보낸 이후 평일 5일 이후에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지구는 구매자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방 정부 지정 빈곤 기준선(FPL)에 해당하는 주거자의 경우:

가계 소득이 연방 정부 지정 빈곤 기준선(FPL)의 200% 미만에 해당된다고 도시와 지역 수도에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해당 지구는 근무 시간 내에 진행되는 서비스 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오십 달러(\$5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용이 낮을 경우, 실제 복구비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복구 서비스는 도시와 지역 수도에서 복구비로 백오십 달러(\$15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용이 낮을 경우, 실제 복구비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매년 변경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주거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구는 12달마다 발생하는 연체된 수도 요금에 붙은 이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가구에서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보조적 소득 보장/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가계의 연간 소득이 연방 정부 지정 빈곤 기준선(FPL)의 200% 미만에 해당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수도 요금 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에 거주하는 구매자는 연방 정부 지정 빈곤 기준선(FPL)의 200% 미만에 해당된다고 인정됩니다.

집주인-세입자 관계에 처한 경우:

¹ "1차 의료 제공자"는 복지와 시설 법률 항목 14088(b)(1)의 문단 (1)의 호(A)에 나타난 정의를 따릅니다

해당 지구에서는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는 1인 가구 주택, 다세대 주거 공간과 트레일러형 이동 주택, 이주 노동자 합숙소 안에 설치된 영구 주택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상기 주거 공간의 소유주, 매니저 혹은 운영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세대마다 개별적인 수도 계량기를 제공하며, 구매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지구에서는 이 같은 경우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최소 평일 기준 10일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를 통해 주거자는 수도 서비스의 구매자가 될 권리가 있으며, 거주자가 세입자로서 임대 계약서 혹은 집세를 납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현재 사용하는 계정에 미납된 금액을 지불할 의무 없이 이후부터 새로운 수도 요금 요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통지받게 됩니다.

하나의 수도 계량기만 달린 다세대 주거 공간의 경우, 해당 주거 공간에 사는 모든 거주자가 수도 서비스 사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련 법률, 지구의 규칙과 관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구는 수도 서비스를 유지 및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해당 지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사용하는 계정으로 차후에 발급되는 수도 요금 고지서를 지불할 수 있거나, 해당 지구가 지구의 규칙과 관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만 따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실질적 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거자들을 대상에 한해 수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포함된 임대료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불금(이때, 해당 지불금은 수도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을 지불하던 주거자는 해당 지구의 수도 서비스 구매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지불 기간 동안 해당 지구에게 지불한 합리적인 요금을 각 지불 기간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는 1인 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지구는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A. 구매자에게 수도 서비스 중단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에 고지합니다.
- B. 연체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 새로 구매자가 된 주거자에게 수도 요금이 연체된 기록이 있는 계정이 해당 주거 환경의 집주인 혹은 매니저 혹은 부동산의 소유였는지 혹은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로 임차 계약서 혹은 임대 계약서, 집세를 납부한 영수증, 거주자가 해당 주거 환경을 임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 민법 항목 1962에 의거한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꼭 이에 한정되지만은 않습니다.